

1. 의결주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현안을 전담하는 차관보 1명을 신설하여 지방행정·자치분권·균형발전지원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도록 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지방시대 실현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혁신조직실, 디지털정부국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디지털정부실, 혁신조직국,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및 균형발전지원국으로 개편하며,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프로세스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용 및 재난 특성을 고려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재난협력실을 안전예방정책실, 자연재난실, 사회재난실 및 재난복구지원국으로 개편하는 한편,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국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8.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7일에서 2024년 9월 17일까지로 연장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정원 4명(8급 3명, 9급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7급 4명)하여 배정하며,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국가기록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2명(8급 2명),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8급 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7급 6명, 8급 1명)하여 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제3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를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7조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를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정책평가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으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미래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부 내 미래전략 관련 대내외 협의체 운영
3.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4.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6.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추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11.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2.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13.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4.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5.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6.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1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8.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9.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의 담당 실·국 지정 및 협의·조정

⑨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4. 부 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5. 부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

6. 부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7. 부 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8.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개선

9. 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11. 부 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12. 부 내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3. 부 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4.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5.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16. 부 내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개선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18.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원 및 경영실적 평가

19.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20.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21.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22. 부 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제10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제5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8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정부혁신조직실)”을 “(디지털정부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디지털정부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혁신조직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부혁신기획관·공공데이터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으로 하며, 정부혁신기획관·공공데이터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을 “디지털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 각각 삭제한다.

③ 디지털정책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 디지털기반정책과, 디지털안전정책과 및 국제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으로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7.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1.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2.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1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9.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21.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22.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에 관한 사항
23.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25.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26.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7.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8.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디지털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 사업의 발굴·추진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구축 지원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9.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시험·평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3.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4.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차의 수립·시행

15.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16.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17.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18.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질관리

19.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20.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⑥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선조치 지

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
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
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제도·정책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
항

18.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
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⑧ 공공데이터국에 공공데이터정책과, 공공데이터관리과 및 통합데이
터분석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⑨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
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공공에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⑩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공유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관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⑪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분석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

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⑫ 공공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 공공서비스통합과, 지역디지털협력과, 공공지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⑬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4.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4.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5.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6.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홍보

17.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9.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 공공서비스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4.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8.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 ⑮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 ⑯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 및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수립·시행
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3.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4.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16.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18.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20.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22.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3.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24.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25.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
26.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27.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의 제목 “(디지털정부국)”을 “(혁신조직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디지털정부국장”을 “혁신조직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조직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직정책관으로 하며, 조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조직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혁신조직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혁신조직국장을 보좌한다.

④ 혁신조직국에 혁신기획과·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정보공개과·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 및 사회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5.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6.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7.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평가
9. 정부혁신 관련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4.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5.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6.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7.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전파
9.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0.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2.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3.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5.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16.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8.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

항

- 22.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23. 지방자치단체 행정사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
- 2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⑦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2.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 3.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 4.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
- 5.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개선
- 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
-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 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⑧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운영
-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개선권고 및 시정요구
-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 15.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홍보
- 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제도화 연구
- 17.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운영 모델의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
- 1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 한다) 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19.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의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20. 공공서비스 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21.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22. 공공서비스 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
23.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 공공서비스 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25.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2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27.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28.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29.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30.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

⑨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8.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
 9.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시행
 11.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12.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1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1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15.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1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18.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19.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20. 외국 정부의 조직·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 조사
- ⑩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도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16.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7. 국민 참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18.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19. 국방 및 환경 분야 등 행정조직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0. 국방 및 환경 분야 등 행정조직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 ⑪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 ⑫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 제11조의 제목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을 “(지방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지방행정국장”으로 하며,

“가등급”을 “나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새마을발전협력과,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시·도지사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11.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1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3.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5.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6.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활용 및 보급

20.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21.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2.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 지원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지원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추진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협조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8.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지원

10.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2.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개정 및 운영
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및 관리
5.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6.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7.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8.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9.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10. 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
11.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리
12.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
13.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1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5.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7.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 총괄 및 지원
18.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19.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20.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지원
21.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23.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4.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5.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1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13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홍보
1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제11조제14항부터 제2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① 자치분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 자치분권지원과, 지방인사제도과,
주민과, 선거의회자치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3.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운영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
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보급 및 관리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면·동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 방안 연구
 18.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19.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개선
 2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분권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조정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협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조정 및 승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조정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읍·면·동의 폐지·설치·분할·통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이장·통장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개선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15.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
 16.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개선
-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

다)의 연구·개선

6. 지방공무원 징계·소청제도의 연구·개선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분석 및 활용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 및 운영 지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장애인·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시행
8.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주민투표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6.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7.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8.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2.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3.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4.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5.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6.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7.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9.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20.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균형발전지원국에 균형발전제도과, 균형발전진흥과, 지역활성화과, 지역기업지원과, 주소생활공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지정·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분석 및 개선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점검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감독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운영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택 종합계획·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협의·승인, 평택 지역개발 사업의 지도관리·평가 및 재정지원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관리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6.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1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⑤ 지역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업무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민간·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구축 및 운영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
7.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11.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1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조직의 육성 및 지원

1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15.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점검 및 평가
16.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 개선
18.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⑥ 지역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기업 유치·육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애로사항의 지원
2.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4.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6.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관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유통 및 주소전환·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융합·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협회·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경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으로 하며,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을 “지방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및 회계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지방세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⑨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 부동산세제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제12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12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⑮ 지역경제지원국에 지역경제과, 지방규제혁신과, 지역금융지원과, 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같은 조 제16항 각호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기업정책과장”을 “지방공기업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기업관리과장”을 “지방공공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안전정책실)”을 “(안전예방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정책실장”을 “안전예방정책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을 “안전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안전사업조정과·재난안전산업과 및 승강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

4.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6. 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운영

7. 안전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분석

8. 신종위험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9. 안전 관련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본부 내 진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실·국·센터·관 및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9.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분야 신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분야 제품의 개발 촉진 및 인증에 관한 사항
- ⑦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승강기시설 안전정책의 총괄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고시의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4.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상정안전검토
 6. 승강기 제조, 관리부실 및 중대사고·고장에 대한 조사 및 안전대책 권고
 7.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9.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특례기준, 우수업체 선정 등 관련 제도의 운영
 10.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11.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12. 승강기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 ⑧ 예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18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예방정책국에 예방안전제도과·안전개선과·재난안전점검과 및 안전문화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⑩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2.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재난예방의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4.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총괄
6.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사업 추진
8.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 관리
1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11.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
12.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13. 기업 재난관리표준의 제정·개정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수립 기준 운영
14.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 인증 세부기준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운영
15.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ISO)에 관한 협의 및 관리

1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점검
17. 재난종합상황 분석·전망 등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및 제공
18.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통계조사기법 연구 및 통계관리
19.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20. 안전기준 조사 및 미비점 발굴
21.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 및 조정
22. 안전기준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건축 시설, 생활 및 여가, 환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사이버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보건·식품, 그 밖의 사항의 안전기준 심의·등록 등에 관한 사항
24. 안전기준 개선 및 이행상황 점검·관리
25.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기준의 비교 분석·연구
27. 긴급신고전화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평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3. 생활안전 모니터단 및 생활안전 점검·컨설팅단의 운영에 관한 사

항

4.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운영
6.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관리
7.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리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침의 수립
10.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 및 보행안전시설 기준의 개발·운영
1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및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12.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1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총괄·지원
14. 도로교통사고 예방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의 개정 및 제도 운영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관리
19. 어린이놀이시설 위해성 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21.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2. 재난 징후 정보관리
 23. 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운영
 24.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운영
- ⑫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및 점검결과 분석·제도개선 권고
 2.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조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3.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운영
 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점검
 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
 8. 안전점검결과의 기록·분석·통계관리·보존 및 제공
 9.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
 1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추진
 11.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4.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6. 유·도선안전협회의 지도·감독

17. 유·도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⑭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8조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⑮ 재난안전정보센터에 재난정보통신과·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⑯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
2.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리 및 국내외 기술표준화
3. 재난 관련 기관의 재난정보통신 관련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5. 재난 예보·경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예보·경보 발령의 지원

6.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7. 재난관리 긴급통신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업무의 총괄·조정

10.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11. 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조정

12.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13.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의 통합·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⑰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
2.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의 활용 및 확산 지원
5. 다른 기관 통신망·상용망 연계 및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
6. 재난안전통신망 서울·대구·제주 운영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7.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번호자원 배분 및 가입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통신환경 변화 대응 및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고도화
9.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교육·훈련
10.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국내외 기술표준화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⑮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수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

제19조의 제목 “(재난관리실)”을 “(자연재난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난관리실장”을 “자연재난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으로 하며,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을 “재난관리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제8항(중전의 제9항)의 제4호 및 제6호 중 “재해영향평가등”을 각각 “재해영

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정책과·재난대응훈련과·재난자원관리과·재난정감과 및 재해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대비·대응·복구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대비·대응·복구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3.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6.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및 관리
9.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실 소관 정책연구용역 총괄
11. 재난관리실 소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2.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3. 재난 관련 통계관리·분석,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기법 연구
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15. 한국방재협회의 지도·육성 및 지원
16. 재난 대비·대응·복구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17.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재난대비 분야별 상시훈련의 기획·총괄·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의 기획·총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상시점검
6.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에 대비한 인적·물적 자원(이하 이 항에서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 및 총괄
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계획 및 동원계획의 수립·운영

3.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지정·고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관련 관계 부처·기관·단체와 협의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및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앙 및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재난 관련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8. 재난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재난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재난 관련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재난 관련 자원봉사활동 조정 및 관리 지원
- ⑨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9조제10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 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총괄과·자연재난대응과·기후재난대응과·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⑪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대응 대책의 총괄·조정 및 운영

2.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조정 및 주관부처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지침의 수립 및 운영
 5. 재난관리 매뉴얼의 총괄·운영 및 표준·실무 매뉴얼 등의 관리
 6. 재난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 작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지원
 7.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 각 기관별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매뉴얼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9.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총괄
 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2. 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내·외 제도 연구·협력 및 자료 수집
 13.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
 14.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관리·운영
 15.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16.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⑫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풍수해”라 한다) 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2. 풍수해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재해사전에측시스템·풍수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지원 및 풍수해와 관련된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4. 풍수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5. 풍수해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풍수해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제도 정비
 7. 풍수해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8. 풍수해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9.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난위험정보의 활용·관리 및 제공
 11.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지침 및 기준의 개발 보급
 12. 풍수해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13. 풍수해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 ⑬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풍수해·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땅밀림 및 해안침식에 관한 사항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책의 수립
· 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2. 기후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기후재난과 관련된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4. 기후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5. 기후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기후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제도 정비

7. 기후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의 관리 및 중장기대책의 수립

9. 기후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10. 기후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후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12.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⑭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3.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4.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내진성능목표 및 공통적용사항 설정·관리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

7.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지도 작성

8. 지질·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

9. 지진·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⑮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2.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4. 지진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훈련

6.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대응시스템 구축·운영

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추진

8.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9. 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평가

10. 지진해일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

11. 지진·화산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의 제목 “(재난협력실)”을 “(사회재난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난협력실장”을 “사회재난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협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협력정책관 및 사회재난대응정책관으로 하며, 재난협력정책관 및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을 “사회재난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③ 사회재난정책국에 사회재난정책과·재난안전조사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사회재난 분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지원
3.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에 대비 기술 컨설팅 및 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8.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 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및 분석
2.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
3. 국내외 재난 및 재난사고의 사례 수집 및 분석
4.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5.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조사결과 분석·평가 및 운영 총괄
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⑥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3.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6.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7. 국가위기상황 대비 주요 재난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 분석·예측에 관한 연구 및 예방체제 마련

⑦ 사회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⑧ 사회재난대응국에 사회재난대응총괄과·산업교통재난대응과·보건의료재난대응과·가축질병재난대응과 및 환경재난대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제19조의2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10항)에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대응 정책과장”을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12항)에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염병재난대응과장”을 “보건의료재난 대응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과·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를 두며, 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 및 수습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되, 수습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관리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7. 피해주민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대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20.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21.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운영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운영 및 관리
4.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 지원
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재해구호 및 이재민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운영
7. 재해구호물자의 확보·관리 및 지원
8.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9.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관리
10.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 재해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지원
15.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관리
16. 재해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7.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19. 재해구호 현장 및 정보시스템 관련 훈련에 관한 사항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2.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3.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5.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 등 재난보험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6. 재난보험 대상·범위·절차 등 개발 및 운영
7. 풍수해보험 사업의 점검·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9.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양성 및 관리
10.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운영
12. 민간보험사 방재컨설팅 등 지원
13.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14.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재해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표준안 마련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4. 사회재난 수습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5. 구조·구급·수색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구조대의 편성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조정
6. 수습지원단 활동사항 기록의 보존·관리 및 백서 발간
7. 사회재난 수습 정책 연구개발
8. 사회재난 갈등 총괄 관리
9. 사회재난 피해자·유가족 지원체계 수립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조정
10. 국내외 사회재난 피해 및 수습사례 수집 및 분석

⑦ 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자연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3. 자연재난 수습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4. 자연재난 수습 정책 연구개발
5. 자연재난 갈등 총괄 관리
6. 자연재난 피해자·유가족 지원체계 수립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조정
7. 국내외 자연재난 피해 및 수습사례 수집 및 분석

제20조제4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구관·공업연구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기록물 열람 정책 수립·시행 및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관리

제29조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록정보센터”를 “나라기록관의 기록정보센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으로,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를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로 한다.

제49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별표 2의2”를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7명(4급 4명)”을 “43명(4급 10명)”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며, “별표 4의2”를 “별표 4의2 및 별

표 4의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6명”을 “37명”으로 하고, “3명”을 “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으로 하며, “3명(4급)”을 “5명(4급 2명, 4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
2. 재난안전정보센터: 재난정보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3. 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훈련과, 재난자원관리과, 재난경감과 및 재난영향분석과

4. 자연재난대응국: 재난대응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기후재난대응과, 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

5. 사회재난대응국: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산업교통재난대응과, 보건의료재난대응과, 가축질병재난대응과 및 환경재난대응과

6.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및 수습지원과

제55조의2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은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655”를 “1,650”로 하고, 일반직 계 “1,613”을 “1,608”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6”을 “35”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다음에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1”를 신설하며,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1 다음에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5”를 신설하고,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2”를 삭제하며,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삭제하고, 서기관 6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0”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0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9”를 신설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9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을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7”을 삭제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4”를 삭제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을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을 삭제하고,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7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을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을 신설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

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을 신설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신설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을 삭제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삭제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삭제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를 삭제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삭제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을 삭제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삭제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삭제하고, 전산주사보 “15”를 “14”로 하고,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

신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49조제1항 단서 관련)”을 “(제49조제1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으로 하고, 총계 “1,660”을 “1,655”으로 하며, 일반직 계 “1,618”을 “1,613”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36”을 “35”로 하며,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다음에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1 다음에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5”를 신설하며,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2”를 삭제하고,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를 삭제하며, 서기관 6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0”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0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9”를 신설하며,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9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7”을 삭제하며,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4”를 삭제하고,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3”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을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을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7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을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을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을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3”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을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를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를 삭제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3”을 삭제하며, 전산주사보 “15”를 “14”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

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삭제하며, 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을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을 삭제하며,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50조제2항 단서 관련)”을 “(제50조제2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며,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삭제하고, 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을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을 삭제하고,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고위공무원단 5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5”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신설하고,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삭제하며, “기술서기관 5”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삭제하며,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

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를 삭제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50조제3항 단서 관련)”을 “(제50조제3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5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을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5”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 5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신설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삭제하고, “기술서기관 5”를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를 삭제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삭제한다.

별표 6의2의 제목 중 “(제50조제4항 단서 관련)”을 “(제50조제4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삭제한다.

별표 8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을 삭제한다.

별표 8의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대통령기록관장) 1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를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를 삭제한다.

별표 8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며,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삭제하고,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며,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3년 9월 17일”을 “2024년 9월 17일”로 하고,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항 단서의 개정 규정, 별표 2의3, 별표 4의3, 별표 5의3, 별표 8의4의 개정 규정 및 행정안전부령 제7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안전부 정원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17일까지는 별표 2의2을 적용한다.

제3조(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17일까지는 별표 4의2을 적용한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9월 17일까지는 별표 5의2을 적용한다.

③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7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안전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3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3의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3의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별표 4의3의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 공업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5의3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3의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⑤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4의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4의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명으로 본다.

[별표 2의3]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단서 및)

총계	1,655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1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1
별정직 계	8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2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비서(7급 상당)	1
비서(8급 상당)	1
일반직 계	1,613
고위공무원단	3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1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	1

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0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9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원 · 시설연구원 · 방재안전연구원 또는 수석전문관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학예연구원 · 기록연구원 · 공 업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공업연구원 · 시설연구원 또 는 방재안전연구원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 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 통신사무관	49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 는 전산사무관	7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3
행정사무관	118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전산사무관 · 학예연구원 · 기록연구원 · 공업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원 또는 기록연구원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학예연구원 · 기록연구원 · 공업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7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 는 방송통신사무관	34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	13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	1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수의사무관 · 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2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5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전산사무관	30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시설사무관	7
행정주사	87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22
행정주사 · 사서주사 · 전산주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4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6
행정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2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25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0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공업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주사 ·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1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통계주사	1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사회복지주사	3
행정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전산주사	30
전산주사 또는 세무주사	3
방송통신주사	3

공업주사	1	행정서기	15
시설주사	12	전산서기	5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7
방재안전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행정서기 또는 세무서기	1
운전주사	1	행정서기 · 세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주사보	19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방재안전서기 · 전산 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0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0	운전서기	2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4	행정서기보	12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 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4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운전서기보	5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 는 방송통신주사보	14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재안전주사 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9	공업연구사 · 시설연구사 또는 방재안전연구사	2
전산주사보	14	기록연구사	1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	통신운영서기	1
시설주사보	2	사무운영서기	1
운전주사보	1	사무운영서기보	10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시설전문관 · 방재안전전문 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13
		전문경력관 가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서훈 담당)	1	경감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4	경위	5
전문경력관 가군(시험출제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화생방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국회협력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서훈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4		
전문경력관 나군(화생방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통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1		
소방공무원 계	8		
소방령	5		
소방경	1		
소방위	2		
경찰공무원 계	23		
치안감	1		
총경	1		
총경 또는 서기관	1		
경정	12		

[별표 4의3]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255	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
일반직 계	255	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	2	공업사무관·학예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0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 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	행정주사·사서주사·전산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 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7
서기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	행정주사·사서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 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5
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 연구관	1	사서주사·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 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	사서주사·학예연구사·기록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 건연구사	3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5	사서주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 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공업주사·학예연구사·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전산사무관·학예연구관·기 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8	공업주사	1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6	시설주사	2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 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8	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2
사서사무관·시설사무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 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1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0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전산주사보·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3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
사서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
공업주사보	1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전산주사보	1
임업주사보	1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9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2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
행정서기보	7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
공업서기보	1
식품위생서기보 또는 위생서기보	1

운전서기보	5
조리서기보	1
방호서기보	4
공업연구관	1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기계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보	5
사무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보존매체수록 담당)	1

[별표 5의3]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관련)

총계	761
일반직 계	761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0
과학기술서기관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
행정사무관	6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공업사무관	7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 관	4
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방송통신사무관	3

시설사무관	10
방호사무관	4
행정주사	17
행정주사·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3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5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임업주사	4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 주사	3
공업주사	9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
공업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공업주사 또는 전산주사	2
방송통신주사	12
임업주사	5
시설주사	17
시설주사 또는 공업주사	7
의료기술주사	3
의료기술주사·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	3
간호주사	4
방호주사	6
행정주사보	8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 통신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1
공업주사보	12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
방송통신주사보	17
시설주사보	12
임업주사보	4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
의료기술주사보	1
의료기술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6
간호주사보	1
방호주사보	21
행정서기	2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5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5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2
시설서기	1
간호서기	1
운전서기	1
방호서기	23
임업서기	3
행정서기보	12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7
운전서기보	3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280

통신운영주사보	1
전기운영주사보	3
기계운영주사보	2
농림운영주사보	1
건축운영서기	2
통신운영서기	4
전기운영서기	2
기계운영서기	3
통신운영서기보	2
전기운영서기보	3
기계운영서기보	1
열관리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방호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체력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가군(예비군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기계관리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방호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체력관리 담당)	5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관리 담당)	3

[별표 8의4]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단서 관련)

총계	77
일반직 계	7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연구직 또는 임기제(대통령기록관장)	1
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4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2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전산사무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8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
행정주사 · 사서주사 · 전산주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8
사서주사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4
공업주사	2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전산주사보 ·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1
행정서기	5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
행정서기보	1
운전서기보	1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
학예연구사 · 기록연구사 ·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7
기계운영서기보	1
전문경력관 가군(대통령기록물관리 담당)	1

[별표 1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5조 관련)

1. 행정안전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지방행정국 새마을발전협력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통신망과	6명 (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2025년 9월 30일까지
3) 사회재난실 보건의료재난대응과	4명 (4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4년 9월 30일까지
4)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2명 (4급 1명, 7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5)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	4명 (4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역량센터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4년 6월 30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조의2(차관보) 차관보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제2조(대변인) ① (생략)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안전소통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u> ③ ~ ⑤ (생략)	제2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② (생략) ③ 정책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u>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4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u>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제30호까지</u> ----- ----- ----- ----- ----- ----- -----

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행정협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정책평가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데이터정보화담당관·행정한류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생략)

⑧ 정책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관련

-----.

④ ----- 제7조제3항제31호부터 제36호-----

-----.

⑤ ----- 제7조제3항제37호부터 제44호-----

-----.

⑥ -----미래전략담당관·성과관리담당관-----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⑦ (현행과 같음)

⑧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미래전략의 수립 및 총

동향 관리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4.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5.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6. 부 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7. 부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

8. 부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9. 부 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0.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개선

11. 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13. 부 내 역량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

14. 부 내 역량평가업무의 총괄·조정

관·조정

2. 부 내 미래전략 관련 대내외 협의체 운영

3.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관련 동향 관리

4.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5.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6.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8.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10.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11.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

12.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실적 점검

13.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15. 부 내 역량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6. 부 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17. 부 내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8. 부 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9.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0.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21. 부 내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22. 부 내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23.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4.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

15.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6.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17.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8.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9.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의 담당 실·국 지정 및 협의·조정

⑨ 성과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및 관리

4.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5. 부 내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6.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8.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9.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원 및 경영실적 평가

10.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11. 부 내 정부위원회 현황 관리

1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13.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실적 점검

14.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

15.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

4. 부 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5. 부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

6. 부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7. 부 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8.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개선

9. 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11. 부 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12. 부 내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13. 부 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4.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력 16.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 17. 청년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18.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 19. 그 밖에 행정안전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 12. (생략) 13. 삭제 14. 삭제	15.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16. 부 내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개선 17.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18.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지원 및 경영실적 평가 19.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운용 및 관리 20.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21. 정부청사관리본부 업무의 운영 지원 22. 부 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⑩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현행과 같음)	⑪ ~ ⑬ (생략) 제5조(의정관) ① (생략)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6조(감사관) ① (생략)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무감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④ (생략)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정부혁신조직실) ①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혁신조직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부혁신기획관·공공	⑪ ~ ⑬ (현행과 같음) 제5조(의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지원과)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제9조(디지털정부실) ① 디지털정부실장----- ----- ----- --. ② 디지털정책국장----- ----- ----- -----
---	--	--	--

데이터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으로 하며, 정부혁신기획관·공공데이터정책관 및 조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부혁신기획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 제15호의2 및 제16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보좌한다.

④ 공공데이터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26호부터 제35호까지, 제35호의2 및 제36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보좌한다.

③ 디지털정책국에 디지털정부기획과, 디지털기반정책과, 디지털안전정책과 및 국제디지털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④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7.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
11.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2.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

의 운영 지원

- 1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16.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
- 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육성·지원
- 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9.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20.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 21.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 22.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에 관한 사항
- 23.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 24.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진

- 25.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 26.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 27.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8.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 2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⑤ 디지털기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제도 개선
 -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 4.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 5.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⑤ 조직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제3항제42호부터 제5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보좌한다.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6.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구축 지원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8.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9.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시험·평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1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13.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4.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⑥ 정부혁신조직실에 혁신기획과·행정제도과·국민참여과·민원제도과·공공데이터정책과·정보공개과·공공데이터관리과·통합데이터분석센터·조직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기준·절차의 수립·시행

15.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16.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17.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18.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질관리

19.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20.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⑥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기획과 · 조직진단과 · 경제조직
과 및 사회조직과를 둔다.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
대책의 수립 · 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 · 대응
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
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
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 · 단체의 육성
· 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
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
신기반시설의 지정 · 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
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
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
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
· 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
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 · 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 · 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
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
련 기술 · 제도 · 정책의 연구
· 개선에 관한 사항

18.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
6.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

⑧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5.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8.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9.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스텝 상품화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⑧ 공공데이터국에 공공데이터정책과, 공공데이터관리과 및 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0.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평가

11. 삭제

12. 정부혁신 관련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3.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4.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5. 삭제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2.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3.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4.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전파

⑨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범정부 데이터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및 지원

7. 삭제

8. 삭제

9.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11.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2. 삭제

13.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5.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16.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1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18.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

5.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운영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8.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의 발굴·추진

10.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공공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1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12.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시책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4.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에 관한 사항 19.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0.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 21. 행정기관 등의 협업을 위한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22.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23.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4.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25.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6.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27.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28. 지방자치단체 행정사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 ⑩ 국민참여과장은 다음 사항	15. 데이터 공동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을 분장한다. 1.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홍보 2.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제도화 연구 3.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운영 모델의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 4.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 한다) 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5.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의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6. 공공서비스 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7.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8. 공공서비스 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 9. 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국민디자인단의 운영 지원 11.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공유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	---	--

<u>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12.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u> <u>13.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u> <u>14.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u> <u>15. 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u>16.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운영</u> <u>17.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18.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u> <u>19. 삭 제</u> <u>⑪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u> <u>2.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u> <u>3.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u> <u>4.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u>	<u>10. 메타데이터의 등록·관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⑪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u> <u>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분석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u>	<u>5.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개선</u> <u>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u> <u>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u> <u>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u> <u>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u> <u>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u> <u>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u> <u>13. 삭 제</u> <u>14. 삭 제</u> <u>⑫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u> <u>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u> <u>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u> <u>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u> <u>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u> <u>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u> <u>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u> <u>⑫ 공공서비스국에 공공서비스혁신과, 공공서비스통합과, 지역디지털협력과, 공공지능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	---	--	--

⑬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개선 권고 및 시정요구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⑬ 공공서비스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2.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4. 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8.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0.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12.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14.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15.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6.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홍보 17.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8. 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19. 행정자원공유서비스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
---	--	--	--

⑭ 공공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진단 2.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3.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품질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기준데이터 등 주요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관리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의 수집·등록 및 검증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데이터의 결합에 관한 사항 9.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공유	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 공공서비스통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림,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4.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8.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분 총괄	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0. 메타데이터의 등록·관리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⑮ 통합데이터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2.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분석분야로 한정한다)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관한 사항 6.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공무원 등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⑮ 지역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
---	--	---	--

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조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에 관한 사항		
8.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 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9.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활용 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 류 및 협력		
10. 공공분야 데이터 분석의 결 과 검증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 의 개발·확산		
	11.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⑩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 ·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 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 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17.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1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 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활성 화에 관한 사항
	14.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 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 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 령·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 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⑩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 의	1.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 책의 수립 및 조정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2.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 항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 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 공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 지 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 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u>기능의 총괄·조정</u>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u>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u> 8.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u>제공 및 관리</u> 9.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u>구축 및 운영</u> 10.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 <u>의 수립·시행</u> 11.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 <u>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u> 12.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u>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u> 1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 <u>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u> <u>및 평가</u> 1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u>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u> <u>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u> 15.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 <u>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u> <u>법령 협의</u> 1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u>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u>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 <u>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입기</u>	6.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 <u>능형 신규 서비스의 개발·보</u> <u>급에 관한 사항</u> 7.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 <u>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u> <u>지원에 관한 사항</u> 8.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 <u>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u> <u>및 절차의 수립·시행</u> 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 <u>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u> <u>·운영에 관한 사항</u> 10.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 <u>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u> <u>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11.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 <u>의 수립 및 시행</u> 12.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u>제도 개선</u> 13.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 <u>의·조정</u> 14.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 <u>템의 구축 및 운영</u> 15.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 <u>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u> <u>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u>	<u>제공무원 정원 총괄</u> 18.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 <u>의 별도정원 및 전문입기제공</u> <u>무원의 정원 관리</u> 19.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 <u>개선</u> 20. 외국 정부의 조직·정원 관 <u>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u> <u>조사</u>	16.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 <u>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u> <u>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7.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 <u>비스의 구축 및 운영</u> 18.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 <u>한 정책에 관한 사항</u> 19.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u>의 구축에 관한 사항</u> 20.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 <u>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u> <u>지원 등에 관한 사항</u> 21.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 <u>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u> 22.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u>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u> 23.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 <u>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u> <u>준의 제정·개정</u> 24.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u>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u> <u>확산</u> 25.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u>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u> <u>·점검</u> 26.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
---	--	--	--

⑰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의 개선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

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27.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 삭 제 >

- 단 및 컨설팅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 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도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16.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7. 국민 참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18.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19. 외교분야 등 행정조직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0. 외교분야 등 행정조직의 별도 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의 정원 관리

⑱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⑲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 삭 제 >

< 삭 제 >

4.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제10조(디지털정부국) ① 디지털정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정부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지능정책관으로 하며, 공공지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공공지능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디지털정부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디지털정부국장을 보좌한다.

④ 디지털정부국에 디지털정부

제10조(혁신조직국) ① 혁신조직국장-----

-----.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조직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직정책관으로 하며, 조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조직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5호부터 제5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혁신조직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혁신조직국장을 보좌한다.

④ 혁신조직국에 혁신기획과·

기획과·디지털서비스정책과·지역디지털서비스과·국제디지털협력과·공공지능정책과·디지털자원정책과·디지털안전정책과 및 스마트행정기반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행정제도과·민원제도과 및 정보공개과·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 및 사회조직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3. 정부혁신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4.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5. 정부혁신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6.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7.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⑥ 디지털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하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 촉진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추진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중장기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평가

9. 정부혁신 관련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

10. 정부혁신 관련 컨설팅 추진

11. 정부혁신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행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3. 행정절차제도의 운영·개선 및 교육·홍보
4.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5.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6.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7.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u>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6.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u> <u>7.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u> <u>8.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u> <u>9.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u> <u>10.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의 조사 및 분석</u> <u>11.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u> <u>12.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u> <u>13.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u> <u>14.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u> <u>15.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u> <u>16. 전자정부에 관한 민간과의 협력 포럼 운영</u>	<u>8.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전파</u> <u>9.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 관련 부처간 업무조정 및 지원</u> <u>10.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11.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u> <u>12.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u> <u>13.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1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u> <u>15. 행정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및 진단에 관한 사항</u> <u>16.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u> <u>17.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u> <u>18. 행정업무운영 교육 및 감사</u>		<u>17.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u> <u>1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u>18의2.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u> <u>1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u> <u>⑦ 디지털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전자정부 사업 관련 수주·발주 제도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u> <u>2. 전자정부 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u> <u>3.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u> <u>4. 행정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u>	<u>에 관한 사항</u> <u>19.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u> <u>20. 공공부문 사무 공간 혁신 추진</u> <u>21.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u> <u>22. 행정사 제도에 관한 연구·개선</u> <u>23. 지방자치단체 행정사업무의 지원 및 대한행정사회의 지도·감독</u> <u>2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u> <u>⑦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u> <u>2.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u> <u>3.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u> <u>4.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의 추진</u> <u>5. 행정서비스현장제도의 운영</u>
---	--	--	---	---

<u>사이트의 접근성·호환성 등 품질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5. 전자정부서비스 민간 개방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및 공통 플랫폼 구축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관련 통합적 성과 관리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 7.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8. 전자정부 사업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9. 전자정부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공애플리케이션 관련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의2. 공공데이터 관련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공공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11.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문 총괄	· 개선 6.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사후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7.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8. 민원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 9.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0.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11.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12.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개선 13. 청원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청원 운영현황의 분석 및 관리	12.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에 관한 사항 13.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15.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16. 전자정부 관련 채용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17.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18.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 19. 전자정부지원사업 채용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20.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22.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	--	--

23.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25. 전자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⑧ 지역디지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전환 확산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3.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6.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전	⑧ 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조정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운영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개선	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8.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 9. 지방행정데이터 개방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11. 삭제 12.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추진 및 확산 13.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관련 성과 분석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맞춤형 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5. 맞춤형 서비스 성과관리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홍보 16.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고 및 시정요구 9.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10.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1.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12. 정책실명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업무의 운영 지원 15.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등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에 관한 기획·홍보 16.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에 관한 제도화 연구 17. 국민의 정책과정 참여 활성화 운영 모델의 개발 및 사업 발굴 추진 18.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 한다) 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추진
--	--	--	---

17. <u>각급 행정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u>	19. <u>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u> 의 발굴·관리 및 교육·홍보	⑨ <u>국제디지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시스템 운영</u>
18. <u>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u>	20. <u>공공서비스 디자인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u>	1. <u>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⑩ <u>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9. <u>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u>	21. <u>공공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u>	2. <u>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 <u>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u>
20. <u>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u>	22. <u>공공서비스 디자인 운영의 매뉴얼 개발·보급</u>	3. <u>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u>	2. <u>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u>
21. <u>공공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u>	23. <u>온라인·오프라인 국민참여 촉진·확산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u>	4. <u>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3. <u>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u>
	24. <u>공공서비스 디자인단의 운영 지원</u>	5. <u>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u>	4. <u>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u>
	25. <u>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u>	6. <u>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5.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u>
	26. <u>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u>	7. <u>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6. <u>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u>
	27. <u>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u>	8. <u>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동향 분석 및 사업정보 공유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u>	7. <u>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u>
	28. <u>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u>	9. <u>전자정부 해외진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u>	8. <u>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관리</u>
	29. <u>국민참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u>		9. <u>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u>
	30. <u>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u>		10. <u>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시행</u>
			11. <u>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u>

10. 전자정부 해외진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항을 분장한다.	분장한다.
11.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12. 공무원 충정원제도 및 다음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1. 공공분야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12. 전자정부 관련 해외 홍보에 관한 사항	13.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2.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13. 전자정부 관련 해외 정책 및 기술 동향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14.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의 건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3.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가공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15.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법령 협의	4. 공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수행, 기술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16.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5. 공공분야 인공지능 윤리 개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의 개선
	17. 별도정원의 승인 등 별도정원 제도의 운영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총괄	6. 공공분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신규 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8.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7.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의 알립, 상담, 고지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 공통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19.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8. 공공분야 인공지능 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0. 외국 정부의 조직·정원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및 자료조사	9.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관한 기준	9.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단 및 컨설팅
⑩ 공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⑩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10.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11.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및 절차의 수립·시행 10.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 포털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공분야 개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전자증명서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전자증명서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4. 전자증명서 관련 기관 간 협의·조정 15.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6.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관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⑪ 디지털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12.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3. 정원 배정 시 적용되는 직급별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4. 현행 제도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임시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16.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17. 국민 참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18. 행정협업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19. 국방 및 환경 분야 등 행정조직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20. 국방 및 환경 분야 등 행정조직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⑪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 기획, 조정 및 법·제도 개선 3.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4. 삭제 5. 전자정부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7. 전자정부 클라우드 시책의 수립 및 도입·구축 지원 8.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9.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10.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5.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6.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	---	---	---

11.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시험
· 평가(「지능정보화 기본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성
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
외한다)에 관한 사항
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4.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계획
의 수립·시행 및 평가
15.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16.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관리체계·
기준·절차의 수립·시행
17.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18. 행정정보 공유 서비스 확대
를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조
사
19. 행정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공동이용 서비스 확보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시행
20.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

- 축·운영 및 공동이용정보의
이력·품질관리
21.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의 보
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22.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
한 사항
- ⑫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
에 관한 사항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개

- ⑫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
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사무
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 관리
 4.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
직·정원 관리, 직무등급안의
의견제시 및 관계기관 협의
 5.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
도정원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의 정원 관리

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8.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0.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2.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13.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14.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15.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형태 신분증(이하 이 항에서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 도입 관련 기술·제도·정책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8. 모바일 신분증 시범사업의 추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9.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⑬ 스마트행정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공분야 업무환경 개선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4.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5. 스마트워크센터 관련 법령 · 제도의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 조정

6. 스마트워크센터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전자정부 클라우드 업무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8.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공공부문 영상회의 관련 법령 ·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 조정

10.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1.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14.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15.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

준의 제정 · 개정

16.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통신서비스의 개발 · 보급 및 확산

17.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 · 점검

18.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 시행

19.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지방자치균형발전실) ①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분권정책관 · 균형발전지원관 및 지역기반정책관으로 하며, 지방행정정책관 · 자치분권정책관 · 균형발전지원관 및 지역기반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

제11조(지방행정국) ① 지방행정국장-----

----- 나등급-----.

② 지방행정국에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새마을발전협력과, 공무원단체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
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행정정책관은 「행정안
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
4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및 제20
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
균형발전실장을 보좌한다.

③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
조정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
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
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
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
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
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
원 인사교류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
상 지원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
에 관한 사항
10. 시·도지사회의 개최 등 중

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11.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
영 및 연구

1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
영

13.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
의 구축 및 운영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5.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
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6.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7.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
의 운영·지원

18.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9.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
정 기법의 개발·활용 및 보급

20.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大賞) 선정

21.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④ 자치분권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27호부터 제33호까지, 제33호의2, 제34호부터 제37호까지, 제37호의2 및 제38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보좌한다.

22.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 체계의 구축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 원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 지원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지원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⑤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

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6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자치 균형발전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보좌한다.

⑥ 지역기반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69호부터 제9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자치

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추진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협조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8.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지원
 10.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 ⑥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

균형발전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을 보좌한다.

- 계기관 협의·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2.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개정 및 운영
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및 관리
5.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회 운영
6.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7.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8.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9.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10. 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
11.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

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리

12.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

13.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1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5.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7.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 총괄 및 지원

18.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19.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20.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지원

⑦ 지방자치균형발전실에 자치행정과·민간협력과·사회통합지원과·공무원단체과·자치분권제도과·자치분권지원과·지방인사제도과·선거의회자치법규과·균형발전제도과·균형발전사업과·지역공동체과·새마을발전협력과·지역활성화정책과·주민과·주소정책과 및 생활공간정책과를 둔다.

⑧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2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23.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4.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5.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⑨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관리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원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삭제
13. 시·도지사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삭 제>

운영 지원

14.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15.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16.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1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18.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9.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0.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지원
21.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활용 및 보급
23.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 선정
24.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5.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

체계의 구축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삭 제

⑪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삭 제>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 지원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

상 민간단체의 추천·지원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⑫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추진

2.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4.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5.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6.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협조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8.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9.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운영·지원

10. 삭제

<삭 제>

11. 삭제

⑬ 공무원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⑭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3.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개선

5. 삭제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7.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

⑦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홍보

1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삭 제>

획·운영 및 총괄·조정

8.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

도 모형개발 및 연구·운영

9.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지원

10. 삭제

1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

계 연구 및 지원

1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

· 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

발 및 자문

13.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

· 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4.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

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6.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

델(BRM) 관리 및 개선

1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

델 시스템 개발·보급 및 관

리

18. 삭제

19.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

· 면·동 제도의 연구·개선

에 관한 사항

20. 삭제

21.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22.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

방안 연구 및 개선

23. 삭제

24.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개선

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⑮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

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

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

괄·조정

2.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

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협

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지방행정체

<삭 제>

<u>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 · 조정</u> 4. <u>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을 위한 사무의 협의 · 조정 및 승인</u> 4의2. <u>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지원</u> 4의3. <u>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구 및 개선</u> 5. <u>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원</u> 6. <u>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 · 조정</u> 7. <u>지방자치단체의 폐지 · 설치 · 분할 · 통합 ·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u> 8. <u>읍 · 면 · 동의 폐지 · 설치 · 분할 · 통합 · 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u> 9. <u>이장 · 통장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u> 10.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u>			<u>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u> 11.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구분체계의 연구 · 개선</u> 12. <u>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u> 13. <u>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에 관한 사항</u> 14. <u>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 · 개선</u> ⑩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 · 개선</u> 2. <u>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 개선</u> 3. <u>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 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u> 4. <u>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 · 개선</u> 5. <u>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 · 개선</u> 6. <u>지방공무원 징계 · 소청제도의 연구 · 개선</u>	<삭 제>
---	--	--	---	--------------------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
· 분석 및 활용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
템의 관리·개선 및 운영 지
원

9. 지방자치단체 여성·장애인
·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
형인사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지원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
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⑰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개선
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
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
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주민투표제도
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4. 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
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
한 사항

<삭 제>

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6.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7.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8.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
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
의 연구·개선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
황 관리 및 분석

12.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3.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4.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5.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
지 청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6.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7.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9.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20.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⑱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삭 제>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3.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4.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15.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운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⑲ 균형발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점검

<삭 제>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
행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
· 감독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운영 및 발전종합계획
의 수립 지원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
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
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택 종합계획·연차별계획
의 수립 및 협의·승인,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평
가 및 재정지원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
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
도·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
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
록·관리

15.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
정 및 운영

16.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⑳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의 수립 등 총괄 기획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구
축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삭 제>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6.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점검 및 평가

7.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
보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7.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18.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
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
항

19. 삭제

20.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
산에 관한 사항

21.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 개선

22.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
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23.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
업 추진에 관한 사항

24. 삭제

25. 삭제

㉔ 새마을발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정책개
발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시행, 국내외
새마을운동 지원

2. 새마을운동 관계법령 제정·
개정 및 운영

3.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 운
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새마을지도자대회 개
최 지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및 관리

5. 지구촌 새마을운동 자문위원
회 운영

6. 지구촌 새마을운동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에 대한 중장
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삭 제>

7. 맞춤형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구성·관리 및 신규사업 발굴
8. 새마을운동 초청연수 통합기
본계획 수립 및 관리
9.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 해
외협력사업 계획 및 현황조사
관리
10. 새마을운동사업 관련 양해
각서(MOU)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관리
11.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
업 공적개발원조(ODA) 통계
관리
12.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새마을 유공
정부 포상 및 관리
13.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
동 국내외 사업의 보조금 지
원 및 관리
1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5.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16.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
련 법령의 관리
- ㉔ 지역활성화정책과장은 다음

<삭 제>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업무
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
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
항
4. 지역사회 활성화 홍보에 관
한 사항
5.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민간·공공기관·지
방자치단체 등)의 구축 및 운
영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사업 추진
7.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
8.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
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
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1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관련

교육·홍보

1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㉓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시행
8.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㉔ 주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삭 제>

<삭 제>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관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유통 및 주소전환·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융합·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협회·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㉔ 생활공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 총괄 및 지원

2.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8. 행정안전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

<삭 제>

관

9.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사업의 협력·지원

10.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12.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자전거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 안전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14. 자전거의 날 운영,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1조의2(자치분권국) ① 자치분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치분권국에 자치분권제도과, 자치분권지원과, 지방인사제도과, 주민과, 선거의회자치

법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치분권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개선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3.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개선
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7.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운영
8.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지원
9.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12.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15.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보급 및 관리

16.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면·동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18.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19.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개선

20.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2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자치분권에 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총괄·조정
2.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
결하는 정책에 대한 지원·협
조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을 위한 사무의 협의·조정
및 승인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
6.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연
구 및 개선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의
사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지
원

8.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
체 간 사무처리 이견(異見)에
대한 협의·조정
9.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분할·통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읍·면·동의 폐지·설치·
분할·통합·명칭변경 및 관
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이장·통장 제도에 관한 연
구 및 개선
1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
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배
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
무구분체계의 연구·개선
14.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15.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개선
에 관한 사항
16. 인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
성에 따른 사무특례의 발굴·
개선

⑤ 지방인사제도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

- 개선
 -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개선
 -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 6. 지방공무원 징계·소청제도의 연구·개선
 -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분석 및 활용
 -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 및 운영 지원
 - 9. 지방자치단체 여성·장애인·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지원
 -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 운영 및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⑥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 장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6. 주민등록 공동이용 및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시행
 8.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9.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10.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 ⑦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

에 관한 사항

3. 국민투표제도·주민투표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6.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7.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8.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10.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제소 등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 관리 및 분석

12. 자치법규 정비 지원 및 관리

13. 자치법규 정비 관련 평가 및 포상

14. 자치법규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

15.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

<신 설>

지 청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16.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보고된 자치법규의 쟁점 발굴 및 검토

17. 자치법규 관련 중앙과 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18.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개선

19. 주민조례청구 등 주민참여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용

20.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3(균형발전지원국) ①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균형발전지원국에 균형발전제도과, 균형발전진흥과, 지역활성화과, 지역기업지원과, 주소생활공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장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발전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3.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4.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5.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연계·협력사업 지원
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 등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
8.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9. 생활인구 관련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연구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및 지원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분석 및 개선
12. 지방소도읍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3.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및 운영
14.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균형발전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시행
2.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점검
3.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업의 추진
4. 섬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5. 섬 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6.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섬의 날 행사 지원

7. 한국섬진흥원 지원 및 지도
· 감독
8.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운영 및 발전종합계획
의 수립 지원
9.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
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지원
10.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
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평택 종합계획·연차별계획
의 수립 및 협의·승인,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평
가 및 재정지원
1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시행
13. 온천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14.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
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
도·감독, 보양온천제도의 운
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
록·관리
1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 법률」의 운영 및 제도개선
16. 고향사랑 기부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7.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
화를 위한 교육·홍보
 18.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관리·운용 등에 대한 지도·
감독
 - ⑤ 지역활성화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2. 지역사회 활성화 관련 업무
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
원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
항
 4. 지역사회 활성화 홍보에 관
한 사항
 5.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민간·공공기관·지
방자치단체 등)의 구축 및 운
영
 6.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사업 추진

7. 지역거점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8. 지역 활성화를 위한 유희(遊休) 공간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지역 생활권 단위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등 제도 기반 마련
11. 지역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총괄 기획
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네트워크 구축
1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조직의 육성 및 지원
1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추진
15.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의 지도·점검 및 평가
16. 공동체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 개선
18.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주민 참여 협업프로젝트 총괄 지원

- ⑥ 지역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기업 유치·육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애로 사항의 지원
2.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4.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6.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⑦ 주소생활공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소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주소정보 및 주소정보시설의 구축·관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4. 주소정보기본도 통합관리 및

- 갱신
5. 주소정보 품질관리·유통 및 주소전환·갱신 지원
6. 주소정보 관련 활용 지원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소정보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8.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9. 주소정보 기반의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구축·융합·보급
10. 주소정보산업 통계 작성 및 기술동향 조사·공유
11. 주소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2. 주소정보 관련 위원회·협회·학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14.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의 수립·추진,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및 화장실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경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으로 하며,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19호의2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재정경제실장

관련 단체의 지원

15.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추진

16.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재정국장-----

③ 지방재정국에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및 회계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을 보좌한다.

④ 지방세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20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보좌한다.

⑤ 지역경제지원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3항제40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보좌한다.

⑥ 지방재정경제실에 재정정책과·재정협력과·교부세과·회계제도과·지방세정책과·부동산세제과·지방소득소비세제과·지방세특례제도과·지역경제과·지방규제혁신과·지역금융지원과·공기업정책과 및 공기업관리과를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⑧ ~ ⑪ (생략)

<신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④ ~ ⑦ (현행 제8항부터 제11항과 같음)

⑧ 지방세제국장은 고위공무원

<신설>

⑫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략)

26. 삭제

⑬ ~ ⑮ (생략)

<신설>

<신설>

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⑨ 지방세제국에 지방세정책과, 부동산세제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및 지방세특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⑩ -----
-----.

1. ~ 25. (현행과 같음)

2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 ⑬ (현행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⑭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고위공무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⑮ 지역경제지원국에 지역경제과, 지방규제혁신과, 지역금융지원과, 지방공기업정책과 및 지방공공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⑬ -----

-----.

1. ~ 12. (생략)

<신설>

⑭ ~ ⑮ (생략)

⑯ 공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⑰ 공기업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생략)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 상황총괄 담당관 1명, 상황담당관 4명 및 서울상황센터장 1명을 두며, 상황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15조(안전감찰담당관) 안전감찰

⑬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 ~ ⑮ (현행과 같음)

⑯ 지방공기업정책과장-----
-----.

1. ~ 13. (현행과 같음)

⑰ 지방공공관리과장-----
-----.

1.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안전감찰담당관) -----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8조(안전정책실) ① 안전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안전관리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안전정책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안전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생활안전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18조(안전예방정책실) ① 안전예방정책실장-----

-----.

② 안전정책국장-----

-----.

③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총괄과·안전사업조정과·재난안전산업과 및 승강기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안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조제3항제18호부터 제27호까지, 제30호 및 제32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안전정책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안전정책실장을 보좌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
4.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5.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6. 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운영
7. 안전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분석
8. 신종위험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9. 안전 관련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본부 내 진보에 관한 사항

⑤ 예방안전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3항제39호부터 제53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안전정책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안전정책실장을 보좌한다.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실·국·센터·관 및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⑥ <u>안전정책실에 안전기획과 · 안전사업조정과 · 재난정보통신과 · 재난안전데이터과 · 재난안전통신망과 · 안전개선과 · 안전문화교육과 · 승강기정책과 · 예방안전과 · 안전제도과 및 재난안전산업과를 두며, 안전기획과장 · 안전사업조정과장 · 재난안전데이터과장 · 안전개선과장 · 안전문화교육과장 · 승강기정책과장 · 예방안전과장 · 안전제도과장 및 재난안전산업과장은 각각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u>	6. <u>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u> 7. <u>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u> 8. <u>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 · 개선에 관한 사항</u> 9. <u>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 ·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⑥ <u>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u>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2. <u>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u>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u>재난안전 분야 신기술의 개발</u> 촉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u>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사업화</u> 지원에 관한 사항 5. <u>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u>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 · 관리에 관한 사항 6. <u>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u>	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시설연구관 · 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⑦ <u>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 조정</u> 2.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u>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하며, 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운영</u> 4. <u>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u> 5. <u>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 · 지원</u> 6. <u>삭제</u> 7. <u>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 · 운영</u> 8. <u>안전에 관한 국 · 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 · 분석</u> 9. <u>신종위험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 운영</u> 10. <u>안전 관련 유공자 및 기관 ·</u>	7. <u>재난안전분야 제품의 개발 촉진 및 인증에 관한 사항</u> ⑦ <u>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승강기시설 안전정책의 총괄</u> 2. <u>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고시의 운영</u> 3. <u>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u> 4. <u>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원</u> 5. <u>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상정안전 검토</u> 6. <u>승강기 제조, 관리부실 및 중대사고 · 고장에 대한 조사 및 안전대책 권고</u> 7. <u>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 · 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 조사</u> 8. <u>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 · 감독</u> 9. <u>승강기 제조 · 수입업의 특례</u>
--	---	--	---

단체 등의 포상(행정안전부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본부 내 전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실·국·관 및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⑨ 안전사업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 관련 중기사업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6의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 2.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리 및 국내외 기술표준화의 등에 관한 사항	기준, 우수업체 선정 등 관련 제도의 운영 10.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11.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12. 승강기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⑧ 예방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⑨ 예방정책국에 예방안전제도과·안전개선과·재난안전점검과 및 안전문화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의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의 결과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의 연계 협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6의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에 관한 사항 7. 소방안전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⑩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 2.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리 및 국내외 기술표준화	⑩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2.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
---	--	---	--

3. 재난 관련 기관의 재난정보 통신 관련 사업 중복투자 방 지에 관한 사항	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의 통합·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3. 기업 재난관리표준의 제정 ·개정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수립기준 운영
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3. 재난예방의 홍보 및 재난예 방 기법 연구	14.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 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 인 증 세부기준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운영
5. 재난 예보·경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예보·경보 발령의 지원	4.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 에 관한 사항		15.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IS O)에 관한 협의 및 관리
6.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5.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총괄		1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 속성계획 수립 및 점검
7. 재난관리 긴급통신지원체계 의 구축 및 운영	6.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7. 재난종합상황 분석·전망 등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및 제공
8.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 획 및 사업 추진		18.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통계조사기법 연구 및 통계관 리
9.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 보안업무의 총괄·조정	8.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19.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 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운영
10.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 ·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 영	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직원의 현황 관리		20. 안전기준 조사 및 미비점 발 굴
11. 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IC 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 ·조정	10.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 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21.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의 안전기준 협의 및 조정
12.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 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및 운영	11.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지원 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 영		22. 안전기준심의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 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23. 건축 시설, 생활 및 여가, 환

	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설,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사이버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보건·식품, 그 밖의 사항의 안전기준 심의·등록 등에 관한 사항 24. 안전기준 개선 및 이행상황 점검·관리 25.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등록·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26.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기준의 비교 분석·연구 27. 긴급신고전화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항 4.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에 관한 사항 4.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운영 6.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관리 7.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리 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침의 수립 10.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 및 보행안전시설 기준의 개발·운영 1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및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12.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1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⑪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수행 및 활용에 관한	⑪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평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3. 생활안전 모니터단 및 생활안전 점검·건설팀단의 운영		

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총
괄·지원

14. 도로교통사고 예방여건 조
성에 관한 사항

15.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
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정
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령의 개정 및 제도 운영

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
관의 지정·관리

19. 어린이놀이시설 위해성 조
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
항

2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21.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의 설
치 장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22. 재난 징후 정보관리

23. 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
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
·운영

24.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⑫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

2.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
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
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
의 활용 및 확산 지원

5. 다른 기관 통신망·상용망
연계 및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

6. 재난안전통신망 서울·대구
·제주 운영센터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7.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번호
자원 배분 및 가입 관리 지원
에 관한 사항

8. 통신환경 변화 대응 및 재난
안전통신망 시스템 고도화

9.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교육·
훈련

활성화 지원 및 안전모니터봉
사단 홈페이지의 운영

⑫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
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기
획·총괄 및 점검결과 분석·
제도개선 권고

2.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조치 및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운영

3.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운영

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기획
·운영 및 총괄·조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
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
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
리 지도·점검

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
진

8. 안전점검결과의 기록·분석

10.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국내외 기술표준화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 통계관리 · 보존 및 제공
- 9.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사고예방 홍보
- 1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중합대책의 추진
- 11.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2.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13.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14.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 · 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15.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16. 유 · 도선안전협회의 지도 · 감독
- 17. 유 · 도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삭 제>

⑬ 안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생활안전 분야 정책의 총괄 · 지원 및 종합계획의 수립

- 2.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 평가 및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 3. 생활안전 모니터단 및 생활안전 점검 · 컨설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 4의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제도 운영
- 4의3.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시행 · 관리
- 4의4.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 관리에 관한 사항
-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리
-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침의 수립
- 7.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 및 보행안전시설 기준의 개발 · 운영
- 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및 등 · 하갯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9. 교통사고 잦은 곳 및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10.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총괄·지원
11. 도로교통사고 예방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14.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령의 개정 및 제도 운영
15.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관리
16. 어린이놀이기구 위해성 조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7.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용
18. 우수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 장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9. 재난 징후 정보관리
20. 안전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안전신고 포털의 구축·운영
21.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운영
22.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지원
23. 그 밖에 관 내 다룰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 (생략) <신설>
⑮ 승강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승강기시설 안전정책의 총괄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 법령 및 고시의 운영
3.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4.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

⑬ (현행 제14항과 같음).
⑭ 재난안전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⑮ 재난안전정보센터에 재난정보통신과·재난안전통신망과 및 재난안전데이터과를 두며, 재난정보통신과장 및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각각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서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상정안전 검토 6. 승강기 제조, 관리부실 및 중 대사고·고장에 대한 조사 및 안전대책 권고 7.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 · 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 구·조사 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검사 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9.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특례 기준, 우수업체 선정 등 관련 제도의 운영 10. 승강기 안전교육 및 홍보 11. 승강기종합정보시스템의 관 리 및 운용 12. 승강기안전점검 실시에 관 한 사항 ⑩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2.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 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 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공업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⑩ 재난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 2.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 리 및 국내외 기술표준화 3. 재난 관련 기관의 재난정보	3. 재난예방의 홍보 및 재난예 방 기법 연구 4. 국민안전 현장 관찰단 운영 에 관한 사항 5.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관 지정 운영 총괄 6. 생활안전지도 및 안전지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 획 및 사업 추진 9.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 관리 11.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 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12.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지원 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운 영 13.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 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통신 관련 사업 중복투자 방 지에 관한 사항 4.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5. 재난 예보·경보 전달체계의 구축 및 예보·경보 발령의 지원 6.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7. 재난관리 긴급통신지원체계 의 구축 및 운영 8.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 보안업무의 총괄·조정 10.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 ·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 영 11. 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IC 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 ·조정 12. 재난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 계 및 공동 활용체제의 구축 및 운영 13.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의
--	---	---	--

및 관리 14. 기업 재난관리표준의 제정 · 개정 및 재해경감활동계획 세부수립기준 운영 15. 재해경감 활동 우수기업 인 증 세부기준 마련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운영 16.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IS O)에 관한 협의 및 관리 1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연 속성계획 수립 및 점검 18. 재난종합상황 분석·전망 등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및 제공 19.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통계조사기법 연구 및 통계관 리 20.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안전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운영 2. 안전기준 조사 및 미비점 발 굴	통합·연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 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 15.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총괄·조정 2.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 한 표준운영절차(SOP)의 수 립 및 보완	3.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 및 조정 4. 안전기준심의회의 운영에 관 한 사항 5. 건축 시설, 생활 및 여가, 환 경 및 에너지, 교통 및 교통시 설, 산업 및 공사장, 정보통신 (사이버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보건·식품, 그 밖 의 사항의 안전기준 심의·등 록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기준 개선 및 이행상황 점검·관리 7. 안전기준의 효율적인 등록·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 축 및 운영 8.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및 안 전기준의 비교 분석·연구 9.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 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1.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재	3. 재난안전통신망의 암호화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 의 활용 및 확산 지원 5. 다른 기관 통신망·상용망 연계 및 공동 활용 협업체계 구축 6. 재난안전통신망 서울·대구 ·제주 운영센터 시스템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7.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번호 자원 배분 및 가입 관리 지원 에 관한 사항 8. 통신환경 변화 대응 및 재난 안전통신망 시스템 고도화 9.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교육· 훈련 10.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국내 외 기술표준화 및 대외 협력 에 관한 사항
--	---	--	--

<u>정지원에 관한 사항</u> 12. 유·도선안전협회의 지도·감독 13. 유·도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4. 긴급신고전화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⑱ 재난안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2.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 분야 신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6. 재난안전기술 및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분야 제품의 개발 촉진 및 인증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	⑱ 재난안전데이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데이터의 수집·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데이터 분석과제의 발굴·수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데이터 관련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 관제센터의 운영 지원		<u>관제센터의 운영</u> 제19조(재난관리실) ① 재난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으로 하며,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난관리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9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관리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관리실장을 보좌한다. ④ 재난대응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	제19조(자연재난실) ① 자연재난실장----- ----- ----- ---. ② 재난관리정책국장----- ----- ----- ----- ----- ----- ----- ----- ----- ③ 재난관리정책국에 재난관리정책과·재난대응훈련과·재난자원관리과·재난경감과 및 재난영향분석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④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	--	---

3조제3항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관리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 재난관리 대비·대응·복구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대비·대응·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3.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6.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및 관리
9.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실 소관 정책연구 용역 총괄
11. 재난관리실 소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⑤ 재난복구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3항제34호부터 제47호까지, 제47호의2부터 제47호의4까지,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관리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관리실장을 보좌한다.

12.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법정 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3. 재난 관련 통계관리·분석,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기법 연구
 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15. 한국방재협회의 지도·육성 및 지원
 16. 재난 대비·대응·복구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17.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재난대비 분야별 상시 훈련의 기획·총괄·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의 기획·총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

⑥ 재난관리실에 재난관리정책과 · 재난경감과 · 재난영향분석과 · 지진방재정책과 · 지진방재관리과 · 재난대응정책과 · 재난대응훈련과 · 자연재난대응과 · 기후재난대응과 · 복구지원과 · 재난구호과 · 재난보험과 및 재난자원관리과

-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상시점검
6.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⑥ 재난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에 대비한 인적 · 물적 자원(이하 이 항에서 “재난관리 자원”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 및 총괄
2.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관리 계획 및 동원계획의 수립 · 운영
3.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지정 · 고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관련 관계 부처 · 기관 · 단체와 협의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및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재난관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관리 대비 · 대응 · 복구 관련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협의 · 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 대비 · 대응 · 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3.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에 대한

6. 중앙 및 지역민관협력위원회 운영, 재난 관련 민간단체 · 학회 · 협회 ·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8. 재난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재난대응 교육 · 훈련에 관한 사항
9. 재난 관련 민관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재난 관련 자원봉사활동 조정 및 관리 지원
- <삭 제>

평가

6.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

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및 관리

9.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실 소관 정책연구
용역 총괄

11. 재난관리실 소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12. 신국가방재시스템 및 범정
부적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사항
관리

13. 재난 관련 통계관리·분석,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기법 연
구

1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분과
위원회 운영·지원

15. 한국방재협회의 지도·육성
및 지원

16. 재난 대비·대응·복구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17.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 증
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생 략)

⑨ 재난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
및 이행의 관리·감독

5. (생 략)

6.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중점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고시

7. ~ 17. (생 략)

<신 설>

⑩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
령 및 제도의 운영

2.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시행계
획 수립·추진

3.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

⑦ (현행 제8항과 같음)

⑧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
평가-----

5. (현행과 같음)

6.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
평가-----

7. ~ 17. (현행과 같음)

⑨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⑩ 자연재난대응국에 재난대응
총괄과·자연재난대응과·기후
재난대응과·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
기관·서기관·공업연구원·시
설연구원·방재안전연구원 또

<u>획 수립·추진</u> <u>4.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5. 국가내진성능목표 및 공통적 용사항 설정·관리</u> <u>6.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u> <u>7. 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지도 작성</u> <u>8. 지질·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u> <u>9. 지진·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u> <u>⑪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u> <u>2.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u> <u>3. 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u> <u>4. 지진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u>	<u>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u> <u>⑪ 재난대응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재난 대응 대책의 총괄·조정 및 운영</u> <u>2.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조정 및 주관부처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u> <u>3.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u> <u>4.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지침의 수립 및 운영</u> <u>5. 재난관리 매뉴얼의 총괄·운영 및 표준·실무 매뉴얼 등의</u>	<u>5.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훈련</u> <u>6. 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대응시스템 구축·운영</u> <u>7.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추진</u> <u>8.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u> <u>9. 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평가</u> <u>10. 지진해일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u> <u>11. 지진·화산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u>	<u>관리</u> <u>6. 재난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 작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지원</u> <u>7.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u> <u>8. 각 기관별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매뉴얼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u> <u>9.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u> <u>10.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 계획 수립·총괄</u> <u>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u> <u>12. 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내·외 제도 연구·협력 및 자료 수집</u> <u>13.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u> <u>14.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관리·운영</u> <u>15.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u> <u>16.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개</u>
---	---	---	--

⑫ 재난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대응 대책의 총괄·조정 및 운영 2. 삭제 3.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조정 및 주관부처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삭제 6.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지침의 수립 및 운영 7. 재난관리 매뉴얼의 총괄·운영 및 표준·실무 매뉴얼 등의 관리 8. 재난관리 표준·실무·행동 매뉴얼 작성에 대한 관련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지원 9.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0. 각 기관별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매	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⑫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풍수해”라 한다) 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2. 풍수해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재해사전에측시스템·풍수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지원 및 풍수해와 관련된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4. 풍수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5. 풍수해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풍수해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제도 정비 7. 풍수해 분야 위기관리 매뉴	뉴얼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1. 국가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 계획 수립·총괄 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내·외 제도 연구·협력 및 자료 수집 16. 재난관리와 관련된 유공자 및 기관·단체 등의 포상 17.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관리·운영 18. 지역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기능의 강화에 관한 사항 18의2.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 재난대응훈련과장은 다음 사	업 개정·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8. 풍수해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9.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 10. 재난위험정보의 활용·관리 및 제공 11.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지침 및 기준의 개발 보급 12. 풍수해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13. 풍수해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⑬ 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
--	---	--	---

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재난대비 분야별 상시 훈련의 기획·총괄·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의 기획·총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중앙평가단 구성·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 제도연구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상시점검
6. 재난대비 훈련과 연계된 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
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항을 분장한다.

1. 기후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풍수해·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땅밀림 및 해안 침식에 관한 사항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2. 기후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기후재난과 관련된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
4. 기후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5. 기후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6. 기후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제도 정비
7. 기후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⑭ 자연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이하 “풍수해”라 한다) 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
2. 풍수해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
3. 재해사전예측시스템·풍수피해예측시스템의 구축·지원 및 풍수해와 관련된 상황판단 회의의 운영

8.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 지역의 관리 및 중장기대책의 수립

9. 기후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10. 기후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후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12.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의 추진

⑭ 지진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
3.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4. 내진보강대책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내진성능목표 및 공통적용사항 설정·관리
6.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 및 활용

4. <u>풍수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u> 5. <u>풍수해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u> 6. <u>삭제</u> 7. <u>풍수해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제도 정비</u> 8. <u>풍수해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u> 9. <u>풍수해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u> 10. <u>삭제</u> 11. <u>삭제</u> 12. <u>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에 관한 사항</u> 13. <u>삭제</u> 14. <u>재난위험정보의 활용·관리 및 제공</u> 15. <u>삭제</u> 16. <u>배수펌프장 운영·관리지침 및 기준의 개발 보급</u> 17. <u>풍수해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u>	7. <u>활성단층 조사·연구 및 지도 작성</u> 8. <u>지질·지반조사 자료 구축 및 활용</u> 9. <u>지진·지진해일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u>	18. <u>풍수해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u> ⑮ <u>기후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기후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중 풍수해·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되, 땡밀림 및 해안 침식에 관한 사항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책의 수립·조정 및 사전대비·대응 총괄</u> 2. <u>기후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지원</u> 3. <u>기후재난과 관련된 원인·상황분석 등의 판단을 위한 회의의 운영</u> 4. <u>기후재난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u> 5. <u>기후재난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u> 6. <u>기후재난 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보급 및 관련 법·제도 정비</u>	⑮ <u>지진방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u> 2. <u>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 관련 재난사태의 선포 및 해제에 관한 사항</u> 3. <u>지진·화산재해 원인조사단 구성·운영</u> 4. <u>지진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u> 5. <u>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교육·훈련</u> 6. <u>지진·지진해일·화산재해대응시스템 구축·운영</u> 7. <u>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추진</u> 8. <u>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u> 9. <u>지진해일 주민대피 관련 시설 및 준비태세의 점검·평가</u>
--	--	--	--

7. 기후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운영 및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승인에 관한 사항

8.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습가뭄재해 지역의 관리 및 중장기대책의 수립

9. 기후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10. 기후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11. 기후재난 기록의 보존 및 관리·활용

12.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의 추진

⑯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관리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대책의 추진

10. 지진해일 해안침수예상도의 제작·활용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보존

11. 지진·화산재난 관련 협업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7. 피해주민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대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 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20.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21.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⑰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운영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운영 및 관리
 4.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 지원
 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재해구호 및 이재민관리에

<삭 제>

- 관한 정보시스템 운영
7. 재해구호물자의 확보·관리 및 지원
8.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9.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관리
10. 삭제
11.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1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4. 재해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지원
16.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관리
17. 재해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9.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20. 재해구호 현장 및 정보시스템 관련 훈련에 관한 사항 ⑱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2.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3.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5.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 등 재난보험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6. 재난보험 대상·범위·절차 등 개발 및 운영 7. 풍수해보험 사업의 점검·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삭 제>	8.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9.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양성 및 관리 10.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운영 12. 민간보험사 방재건설팅 등 지원 13.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14.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재해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재난협력실) ① 재난협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19조의2(사회재난실) ① 사회재난실장----- ----- ----- -----. ② 사회재난정책국장----- -----
---	--------------------	---	--

재난협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난협력정책관 및 사회재난대응정책관으로 하며, 재난협력정책관 및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재난협력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협력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협력실장을 보좌한다.

④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3항제20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재난협력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재난협력실장을 보좌한다.

③ 사회재난정책국에 사회재난정책과·재난안전조사과 및 재난안전연구개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사회재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사회재난 분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지원
3.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에 대비 기술 컨설팅 및 훈련 지원

⑤ 재난협력실에 재난협력정책과·재난안전점검과·재난안전조사과·재난안전연구개발과·사회재난대응정책과·산업교통재난대응과·감염병재난대응과·가축질병재난대응과·환경재난대응과·수습지원과를 두며, 재난협력정책과장·재난안전점검과장·재난안전조사과장·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산업교통재난대응과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8.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책 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및 분석
2.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
3. 국내외 재난 및 재난사고의 사례 수집 및 분석
4.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사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5.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조사결과 분석·평가 및 운영 총괄

장·감염병재난대응과장·가축 질병재난대응과장·환경재난대 응과장·수습지원과장은 부이 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 업연구원·시설연구원·방재안 전연구원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⑥ 재난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 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사회재난 분야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 업체계 구축·지원 3. 사회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4. 사회재난에 대비 기술 컨설 팅 및 훈련 지원 5. 사회재난 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 및 대책 수립 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에 대한 관리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8. 사회재난 관리 관련 협업정	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 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⑥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연 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3.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 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 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 항 5.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 한 조사·분석 및 평가 6.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연구개 발 사업에 대한 지원 7. 국가위기상황 대비 주요 재난 에 대한 위험요인의 사전 분석 ·예측에 관한 연구 및 예방 체제 마련	책 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 확 산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 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재난안전점검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 는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기 획·총괄 및 점검결과 분석· 제도개선 권고 2.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조치 및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운영 3.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의 구성 ·운영 4. 집중 안전점검 기간의 기획 ·운영 및 총괄·조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 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재난의 발생이 우려되 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 리 지도·점검 7.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의 추	⑦ 사회재난대응국장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	---

진 8. 안전점검결과의 기록·분석 ·통계관리·보존 및 제공 9.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 사고예방 홍보 10.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중 합대책의 추진 11. 지역축제 행사장의 안전관 리에 관한 사항 ⑧ 재난안전조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 사 및 분석 2.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 사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보 급 3. 국내외 재난 및 재난사고의 사례 수집 및 분석 4. 재난 및 재난사고의 원인 조 사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5.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조사결과 분석·평가 및 운영 총괄 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 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⑨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은 다	⑧ 사회재난대응국에 사회재난 대응총괄과·산업교통재난대응 과·보건의료재난대응과·가축 질병재난대응과 및 환경재난대 응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 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공업연구원·시설연구원·방재 안전연구원 또는 수석전문관으 로 보한다. < 삭 제 >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 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3.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 연구 개발사업의 총괄 및 관리 4.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6. 재난안전 분야 기술의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7. 국가위기상황 대비 주요 재 난에 대한 위협요인의 사전 분 석·예측에 관한 연구 및 예방 체제 마련 ⑩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 략) ⑪ (생 략) ⑫ 감염병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⑬·⑭ (생 략)	⑨ 사회재난대응총괄과장----- -----. 1. ~ 22. (생 략) ⑩ (현행 제11항과 같음) ⑪ 보건 의료재난대응과장----- -----. 1.~ 11. (현행과 같음) ⑫·⑬ (현행 제13항 및 제14항
---	--	---	--

⑮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 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표준안 마련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4. 수습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5. 구조·구급·수색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구조대의 편성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조정 6. 국내외 재난 피해 및 수습사례 수집 및 분석 7. 수습지원단 활동사항 기록의 보존·관리 및 백서 발간	과 같음) <삭 제>		<신 설>	제19조의3(재난복구지원국) ①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난복구지원국에 복구지원과·재난구호과·재난보험과·수습지원과 및 수습관리과를 두며, 복구지원과장·재난구호과장·재난보험과장 및 수습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되, 수습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복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복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 3.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예산의 운영·관리 4. 재난으로 인한 피해조사 및
--	---------------------------------	--	--------------------	---

복구지원

5. 재난복구체제의 구축과 응급 대책의 추진

6.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7. 피해주민 간접지원 정책 및 제도 운영

8. 재난유형별 복구계획 절차 개발 및 운영

9. 재해복구사업 중앙점검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대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

12. 자연재난 복구공사의 품질 관리기준 설정 및 운영 지도

13.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

16.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대상지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7.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및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9. 복구사례집 등의 발간 및 관리

20. 재해연보의 발간 및 관리

21.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난구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구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2.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지침의 작성·운영

3. 재해구호기금의 적립·운영 및 관리

4.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의 구호 지원

5.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재해구호 및 이재민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 운영
7. 재해구호물자의 확보·관리 및 지원
8.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정책의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
9.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사업의 운영·관리
10.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관리
1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 관련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배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3. 재해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구호센터의 운영 및 지도·지원
15.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지도·

- 관리
16. 재해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7.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8.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19. 재해구호 현장 및 정보시스템 관련 훈련에 관한 사항
- ⑤ 재난보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2. 풍수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및 관리
3.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 확대 추진
5. 풍수해 예방 및 풍수해보험제도 등 재난보험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관련기술의 개발 등 시책의 추진
6. 재난보험 대상·범위·절차 등 개발 및 운영

7. 풍수해보험 사업의 점검·평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풍수해보험 보험요율의 산정 및 관리
 9.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인의 확보·양성 및 관리
 10.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설물별 풍수해보험 손해평가 기준 및 요령의 작성·운영
 12. 민간보험사 방재컨설팅 등 지원
 13. 풍수해보험 통계관리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
 14.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제작지침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5. 침수흔적도 등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 및 재해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 ⑥ 수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
2. 중앙·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표준안 마련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
4. 사회재난 수습 분야별 행동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
5. 구조·구급·수색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특수 기동 구조대의 편성 및 재난현장 파견 관련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의·조정
6. 수습지원단 활동사항 기록의 보존·관리 및 백서 발간
7. 사회재난 수습 정책 연구개발
8. 사회재난 갈등 총괄 관리
9. 사회재난 피해자·유가족 지원체계 수립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의 조정
10. 국내외 사회재난 피해 및 수

	<u>습사례 수집 및 분석</u> ⑦ <u>수습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자연재난유형별 국가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수습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부처, 전문가 등 수습지원단 협의체 운영</u> 2. <u>자연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 유형별 수습지원단 구성 및 수습지원단원의 파견 등 운영 총괄</u> 3. <u>자연재난 수습 분야별 행동 요령 점검 및 긴급 수습·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현장행정 지원</u> 4. <u>자연재난 수습 정책 연구개발</u> 5. <u>자연재난 갈등 총괄 관리</u> 6. <u>자연재난 피해자·유가족 지원체계 수립 및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조정</u> 7. <u>국내외 자연재난 피해 및 습사례 수집 및 분석</u>		기획과·비상대비자원과·비상대비훈련과·민방위과·위기관리지원과 및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⑤ ~ ⑩ (생 략) 제22조(기획부) ① (생 략) ② 기획부에 행정지원과·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제23조(교수부) ① (생 략)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지방의정연수센터·정책리더양성과·전문역량교육과 및 지방자치역량센터를 두며, 교육총괄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장·정책리더양성과장·전문역량교육과장 및 지방자치역량센터장은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u>	----- -----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2조(기획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으로-----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으로 보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수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으로----- -----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u>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① ~ ③ (생 략)	제20조(비상대비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비상대비정책국에 비상대비	④ -----	

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제25조(기록정책부) ① (생략)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정책기획과·기록협력과 및 디지털혁신과를 두며,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기록협력과장 및 디지털혁신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26조(기록관리부) ① (생략) ② 기록관리부에 기록관리정책과·사회기록과·경제기록과 및 특수기록과를 두며, 기록관리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사회기록과장·경제기록과장 및 특수기록과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기록정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기록관리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 ----- -----	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 (생략) ② 기록서비스부에 서비스정책과·보존관리과·복원관리과 및 기록관리교육센터를 두며, 서비스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존관리과장·복원관리과장 및 기록관리교육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신설> 20. (생략)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 -----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 1. ~ 19. (현행과 같음) 19의2. 기록물 열람 정책 수립·시행 및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관리에 20. (현행과 같음)
--	---	--	---

④ ~ ⑥ (생 략) 제29조(나라기록관) ① 나라기록관장은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u> 또는 <u>보건연구관</u>으로 보한다. ② 나라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기록물 열람 정책 수립·시행 및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관리 5.·6. (생 략) 7. 기록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나라기록관) ①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u> ----- -----.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6. (현행과 같음) 7. <u>나라기록관의 기록정보센터</u> --	② (생 략)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① (생 략)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관리총괄과·청사보안기획과·노사후생과·청사기획과·시설총괄과·시설관리과 및 청사건축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 및 청사기획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청사보안기획과장·노사후생과장·시설총괄과장·시설관리과장 및 청사건축과장은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으로 보한다. ③ ~ ⑨ (생 략)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생 략)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시설과·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u>서기관</u>으로, 시설과장은 <u>기술서기관</u>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정부청사관리본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으로----- ----- -----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으로 보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과학기술서기관</u>----- ----- ----- <u>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역사기록관) ① 역사기록관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u> 또는 <u>보건연구관</u>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제31조(행정기록관) ① 행정기록관장은 <u>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u> 또는 <u>보건연구관</u>으로 보한다.	제30조(역사기록관) ① ----- ----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u> -----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행정기록관) ① ----- ---- <u>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u> ----- ----.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생 략)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관리과·시설과·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u>서기관</u>으로, 시설과장은 <u>기술서기관</u>으로, 춘천지소장 및 고양지소장은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으로 보한다. ③ ~ ⑥ (생 략)	제33조(서울청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과학기술서기관</u>----- ----- ----- <u>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u>-----.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생략)	제34조(과천청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 <u>과학기술서기관</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① (생략)	제35조(대전청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시설과·충남지소 및 경북지소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u>기술서기관</u> 으로, 충남지소장 및 경북지소장은 <u>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u> 또는 <u>방송통신사무관</u> 으로 보한다.	② ----- ----- <u>과학기술서기관</u> 으로----- ----- <u>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u>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36조(광주청사관리소) ① -----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37조(제주청사관리소) ① -----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① 대구청사관리소장은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38조(대구청사관리소) ① -----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① 경남청사관리소장은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39조(경남청사관리소) ① -----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① 인천청사관리소장은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제39조의2(인천청사관리소) ① -----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① (생략)	제41조(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원에 기획협력과·재난안전교육과 및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u>서기관</u> 또는 <u>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② ----- ----- <u>과학기술서기관</u> 또는 <u>서기관</u>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생략)	제41조의2(대통령기록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기록관에 행정기획과·생산지원과·기록관리과·기록서비스과 및 보존복원과를 두되, 행정기획과장은 <u>부이사관</u> ·	② ----- ----- <u>부이사관</u> ·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산지원과장·기록관리과장·기록서비스과장 및 보존복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제43조(지방과학수사연구소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과학수사연구소 및 출장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은 부이사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고, 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제주출장소장은 의무사무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 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며-----.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6명(행정주사 3명,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전산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4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10퍼센트-----별표 2의2 및 별표 2의3과 같으며,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정보시스템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2명, 6급 1명),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특수재	② -----

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4명(5급 4명), 안전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37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9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43명(4급 10명)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10퍼센트 -----

②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2의 정원 중 3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15명, 7급 1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으며, 별표 5의2의 정원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10퍼센트 -----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과 같으며,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 ----- 37명 ----- 4명 -----

③ ----- 10퍼센트 -----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 ----- 5명(4급 2명, 4급 -----

④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⑤·⑥ (생략)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으며, 별표 8의3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⑧ ~ ⑪ (생략)

제5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④ -----
----- . <단서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⑦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으며, 별표 8의4의 정원 중 대통령기록물 보존장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4명(연구사 4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6급 또는 연구사 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⑧ ~ ⑪ (현행과 같음)

<삭제>

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2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비상대비정책국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장,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실·국장급 직위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이 조에서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1개 직위를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행정한류담당관, 국제디지털협력과장, 지방규제혁신과장, 비상대비훈련과장, 지진방재정책과장, 재난보험과장,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2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

으로 정하는 과장 1명 및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과장 중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
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
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정책관: 재난정보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2. 재난관리정책관: 재난관리정책과, 재난경감과, 재난영향분석과, 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

3. 재난대응정책관: 재난대응정책과, 재난대응훈련과, 자연재난대응과 및 기후재난대응과

4. 재난복구정책관: 복구지원과,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재난
자원관리과

5.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산업교통재난대응과, 감염병재난대응과, 가축

제54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
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행
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
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총괄담당관,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

2. 재난안전정보센터: 재난정보 통신과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3. 재난관리정책국: 재난관리정책과, 재난대응훈련과, 재난자원관리과, 재난경감과 및 재난영향분석과

4. 자연재난대응국: 재난대응총괄과, 자연재난대응과, 기후재난대응과, 지진방재정책과 및 지진방재관리과

5. 사회재난대응국: 사회재난대응총괄과, 산업교통재난대응과,

질병재난대응과, 환경재난대응
과 및 수습지원과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
보화추진단) ① (생 략)
②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
다)에 기획인프라과·재정정보
화사업과·세외수입보조금정보
과 및 지방세정보화사업과를 두
되, 기획인프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정정보화사
업과장 및 세외수입보조금정보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으로, 지방세정보화사업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⑧ (생략)

보건의료재난대응과, 가축질병
재난대응과, 환경재난대응과
6.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재난구호과, 재난보험과 및 수
습지원과

제55조의2(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으로, 지방세정보화사업과
장은 과학기술서기관--.

③ ~ ⑧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55</u>	<u>1,650</u>	-5
·	·	·	
·	·	·	
일반직 계	<u>1,613</u>	<u>1,608</u>	-5
고위공무원단	<u>36</u>	<u>35</u>	-1
·	·	·	
부이사관·서기관	3	·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21</u>	+21
<u>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u><신 설></u>	<u>5</u>	+5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22</u>	<u><삭 제></u>	-22
<u>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u>4</u>	<u><삭 제></u>	-4
·	·	·	
·	·	·	

서기관	6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50</u>	+50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u><신 설></u>	<u>19</u>	+19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u>	<u><신 설></u>	<u>3</u>	+3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57</u>	<u><삭 제></u>	-57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u>	<u>14</u>	<u><삭 제></u>	-14
<u>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u>	<u>3</u>	<u><삭 제></u>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비서)	1	·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u>	<u><신 설></u>	<u>1</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신 설>	3	+3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 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삭 제>	-1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 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	<삭 제>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7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17	+1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2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4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8	+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49	+49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7	+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4	+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2	+2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3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	17	<삭 제>	-17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2</u>	<u><삭 제></u>	-2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4</u>	<u><삭 제></u>	-4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8</u>	<u><삭 제></u>	-8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49</u>	<u><삭 제></u>	-49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u>	<u>7</u>	<u><삭 제></u>	-7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4</u>	<u><삭 제></u>	-4
<u>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u>	<u>2</u>	<u><삭 제></u>	-2

<u>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u>	<u>3</u>	<u><삭 제></u>	-3
·	·	·	
·	·	·	
전산주사보	<u>15</u>	<u>14</u>	-1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 방재안전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5</u>	<u>14</u>	-1
·	·	·	
·	·	·	

[별표 2의2]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60</u>	<u>1,655</u>	-5
·	·	·	
·	·	·	
일반직 계	<u>1,618</u>	<u>1,613</u>	-5
고위공무원단	<u>36</u>	<u>35</u>	-1
·	·	·	
부이사관·서기관	3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u>21</u>	+22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 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신 설>	<u>5</u>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22</u>	<삭 제>	-22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4</u>	<삭 제>	-4
·	·	·	
·	·	·	

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u>50</u>	+50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신 설>	<u>19</u>	+1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 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신 설>	<u>3</u>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57</u>	<삭 제>	-57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4</u>	<삭 제>	-14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 관·시설연구관·방재안전연구 관 또는 수석전문관	<u>3</u>	<삭 제>	-3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비서)	1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 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 관 또는 보건연구관	<신 설>	<u>1</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공업 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신 설>	3	+3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 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	<삭 제>	-1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 관·시설연구관 또는 방재안전연구관	3	<삭 제>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7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17	+1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2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4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8	+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49	+49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7	+7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 설>	4	+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신 설>	2	+2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3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	17	<삭 제>	-1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삭 제>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삭 제>	-4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	<삭 제>	-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9	<삭 제>	-4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	<삭 제>	-7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삭 제>	-4
기술서기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삭 제>	-2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3	<삭 제>	-3
.	.	.	
.	.	.	
전산주사보	15	14	-1
.	.	.	
.	.	.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방재안전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	14	-1
.	.	.	
.	.	.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 · 2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신 설>	<u>1</u>	+1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 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신 설>	<u>3</u>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u>	<삭 제>	-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 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u>3</u>	<삭 제>	-3
· 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 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 연구관	· · 1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 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 관 또는 보건연구관	<신 설>	<u>7</u>	+7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 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u>7</u>	<삭 제>	-7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 사무관	5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u>1</u>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u>	<삭 제>	-1
· ·	· ·	· ·	

[별표 4의2]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2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2	· · 1	+1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 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신 설>	3	+3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삭 제>	-1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 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	<삭 제>	-3
·	·	·	

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 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 연구관	1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학예 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 관 또는 보건연구관	<신 설>	7	+7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 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7	<삭 제>	-7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 사무관	5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신 설>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삭 제>	-1
·	·	·	
·	·	·	

[별표 5]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5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서기관	2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0</u>	+10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5</u>	+5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6</u>	+6
<u>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 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0</u>	<u><삭 제></u>	-10
<u>기술서기관</u>	<u>5</u>	<u><삭 제></u>	-5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6</u>	<u><삭 제></u>	-6
<u>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3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부칙 제3 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고위공무원단	5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서기관	2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0</u>	+10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5</u>	+5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6</u>	+6
<u>과학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2</u>	+2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0</u>	<u><삭 제></u>	-10
<u>기술서기관</u>	<u>5</u>	<u><삭 제></u>	-5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6</u>	<u><삭 제></u>	-6
<u>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2</u>	<u><삭 제></u>	-2
· ·	· ·	· ·	

[별표 6]

이북5도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5</u>	+5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5</u>	<u><삭 제></u>	-5
·	·	·	
·	·	·	

[별표 6의2]

이북5도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4항 단서 및 행정안전부령 제000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5</u>	+5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5</u>	<u><삭 제></u>	-5
·	·	·	
·	·	·	

[별표 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고위공무원단	· · 1	·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3</u>	+3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3</u>	<u><삭 제></u>	-3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8의3]

대통령기록관 공무원 정원표(제50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 연구직 또는 임기제(대통령 기록관장)	· · 1	· ·	
<u>부이사관 · 서기관 · 과학기술서 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학예 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 관 또는 보건연구관</u>	<u><신 설></u>	<u>4</u>	+4
<u>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학예연구관 · 기록연구관 · 공 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학예연구 관 · 기록연구관 ·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u>	<u>4</u>	<u><삭 제></u>	-4

.	.	.	
.	.	.	

[별표 13]

행정안전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5조의2제8항 관련)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존속기한: 2024년 6월 30일)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2	+2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1	+1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전산</u> <u>사무관</u>	<u><신 설></u>	1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2	<u><삭 제></u>	-2
<u>기술서기관</u>	1	<u><삭 제></u>	-1
<u>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u> <u>관</u>	1	<u><삭 제></u>	-1
.	.	.	
.	.	.	